

부당공동행위 예방 및 경쟁사 접촉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소관부서	컴플라이언스파트
	시행일	2019. 11. 01.
	문서번호	CGV 컴플-CL-02-20191101

2019년 11월 01일 제정



활용 가이드

I. 목적

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예방하고 경쟁사 접촉 등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정합니다.

II. 활용 방법

1. 부당공동행위 및 경쟁사 접촉의 의미 등을 숙지합니다.
2. 경쟁사 접촉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체크리스트 점검 등 접촉시 준수 사항을 이행합니다.
3. 문서 작성시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합니다.

III. 체크리스트 점검 요령

1.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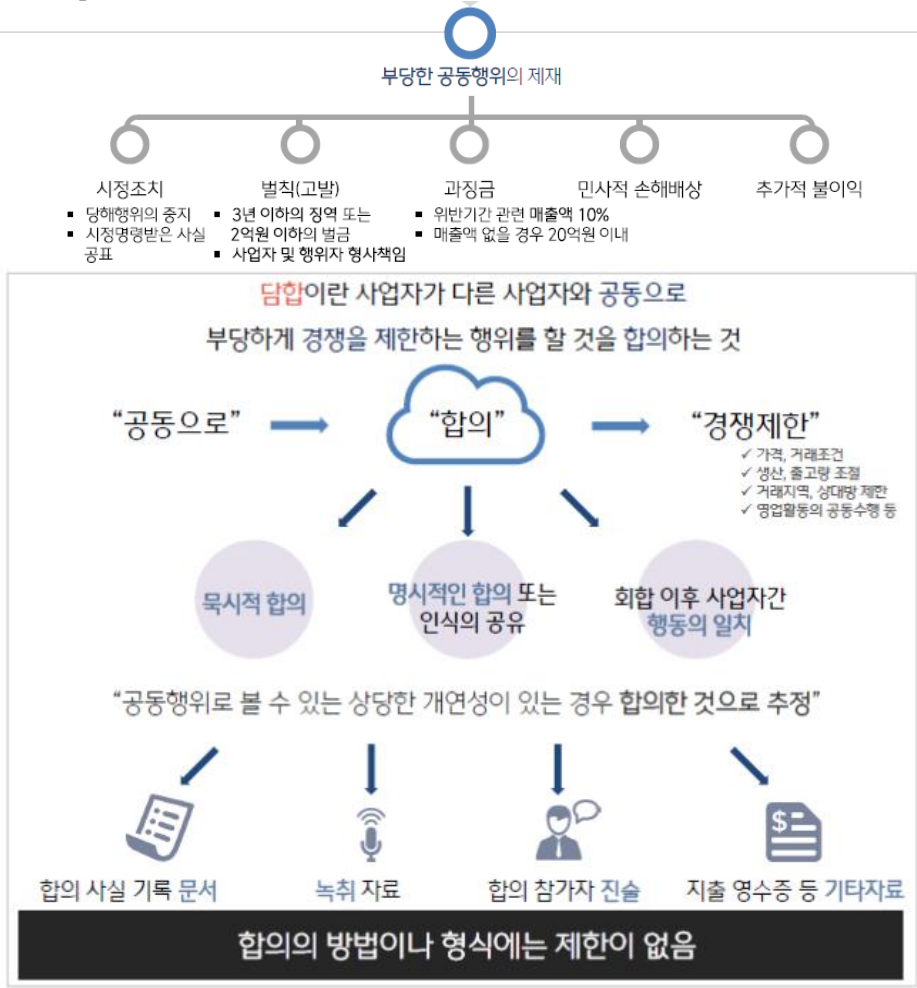
- ‘○’로 체크한 경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 ‘x’로 체크한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시거나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 ‘△’로 체크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2.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기타 체크리스트 내용,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컴플라이언스파트(cgv.cp@cj.net)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제 개요-----	3
II. 부당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	4
1. 부당공동행위의 의미 등 -----	4
2. 경쟁사 접촉의 의미 등 -----	5
3. 경쟁사 접촉 프로세스 -----	6
4.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	9
III. 부당공동행위 예방 및 경쟁사 접촉 체크리스트	
1. 경쟁사 접촉 (사전/사후) 체크리스트 -----	11
2. 경쟁사 접촉 (사전/사후) 신고 시 기재 사항 -----	12
3. 문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	13

1.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제 개요



- 꼭 지켜주세요!**
- 경쟁사와 커뮤니케이션시, 사전적 승인 및 사후적 보고
 - 사업자 단체 모임 참석 시, 가격동향, 시장상황 논의 금지
 - 경쟁사와 정보교환 금지
 - 객관적 근거 자료 확보 및 출처 명기
 - 담합이 의심되는 모임 참여 시, 현장에서 반대 의사 표명
 -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II. 부당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1. 부당공동행위의 의미 등

(1) 부당공동행위의 의미

사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유형별 내용 및 사례는 CP 편람 p41 참조)

- ①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 ②상품의 거래 및 대금 지급 조건 결정
- ③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④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⑤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⑥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 ⑦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⑧입찰담합

(3) 합의의 의미

경쟁사업자(이하 '경쟁사'라 한다)와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약정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합의'에는 명시적인 서면 합의 외에 전화나 모임을 통한 구두 합의는 물론이고, 상호간의 암묵(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금지되는 '합의'의 예시

- 가격,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금지. 특정한 가격이나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유지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합의도 금지
- 판매가격 외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할인, 거래지역, 상품의 종류나 규격, 상품 출시 여부 및 시기, 입찰 참가 여부 및 금액도 합의 금지 대상에 포함
- 상품의 영업·판매정책 또는 구체적인 판매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합의하는 행위 금지

2. 경쟁사 접촉의 의미 등

(1) 경쟁사의 의미

본 가이드라인에서 경쟁사라 함은 국내 극장사업자를 의미한다.

(2) 접촉의 의미

- ① 접촉이라 함은 방법과 수단을 불문하고, 경쟁사(임직원)와의 일체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연락 내지 만남을 의미한다.

예시)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문서, 공문, 이메일, 회의 등

- ② 직접 만나지 않는 '연락'(정보 교환, 단순 안부 문의 등)이나 '만남'(모임, 협회, 경조사, 단순 친목도모 활동 등 내용 불문)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접촉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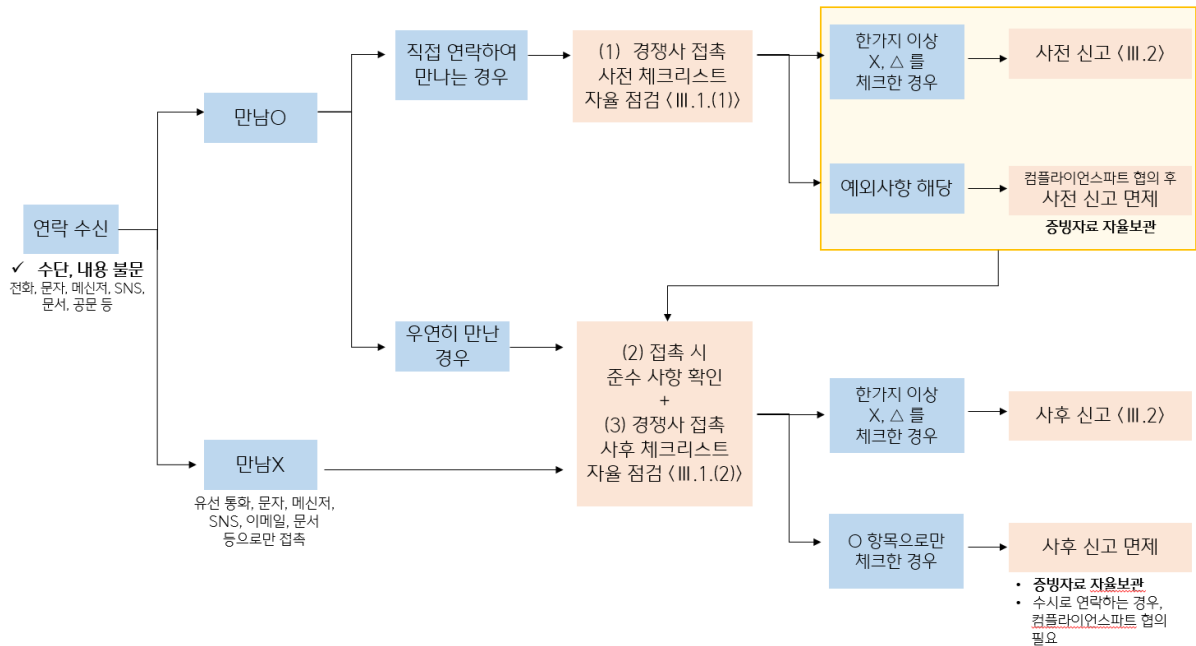
- ①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접촉은 하지 않는다.
- ② 경쟁사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수단과 내용을 불문하고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경쟁사 임직원과는 가급적 접촉을 제한한다.

※ 합의 '추정' 예시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메모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 ③ 경쟁사에서 일하는 친구, 친척, 지인들과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가격 등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④ 부득이하게 경쟁사와 접촉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프로세스를 준수한다.

3. 경쟁사 접촉 프로세스



(1) 접촉 사전 준수 사항

① [사전 체크리스트 점검 의무] 경쟁사와 실제 만나고자 하는 경우 및 경쟁사로부터 만남을 제안 받은 경우 III.1.(1) 경쟁사 접촉 사전 체크리스트를 자율 점검한다.

② [사전 신고 의무] III.2. 경쟁사 접촉 신고시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컴플라이언스파트에 제출한다. 제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출처 : 컴플라이언스파트 이메일(cgv.cp@cj.net)

나. 제출시기 : 접촉 예상일로부터 3 일 전. 준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

③ [사전 신고 의무의 예외]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와 사전 협의 후 신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자율 점검 결과 X 또는 △ 로 체크한 항목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국회의원, 법원, 식약처 등)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접촉

나. 경조사, 친족모임, 동문회, 향우회, 동우회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친분에 의한 접촉

※ 사전 신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억 환기 등을 위하여 접촉 관련 증빙 자료는 자율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협의 및 의견 반영 의무] 접촉 여부 및 접촉시 유의 사항에 대해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하며, 컴플라이언스파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2) 접촉 시 준수 사항

- ① 부당공동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예시) 가격 변동이나 할인 중단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질문에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기타 암묵적으로 동의를 나타내는 제스처 등

- ② 가격 내지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하였음을 명기 요구한다.

위반 사례)

-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인상하자'라고 언급한 행위
- 4 개의 강판제조사가 강판 제품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행위

- ③ 거절 의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판매가격, 마케팅 계획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제공, 요구 또는 교환하지 않는다.

- ⑤ 경쟁사에게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경쟁사로부터 회사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통보한다.

- ⑥ 논의 내용 또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거절의사를 통보한다.

(3) 접촉 사후 준수 사항

- ① [사후 체크리스트 점검 의무]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접촉 이후에는 반드시 Ⅲ.1.(2) 경쟁사 접촉 사후 체크리스트를 자율 점검한다.
- ② [사후 신고 의무] Ⅲ.2. 경쟁사 접촉 신고서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컴플라이언스파트에 제출한다. 제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제출처 : 컴플라이언스파트 이메일(cgv.cp@cj.net)
 - 나. 제출시기 : 접촉일로부터 3 일 이내. 준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
- ③ [사후 신고 의무의 예외]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자율 점검 결과 모두 ○ 로 체크한 경우 사후 신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 가. 수시로 접촉하는 경우(월 1 회 이상)
 - 나. 직접 만남이 있었던 경우

※ 사후 신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억 환기 등을 위하여 접촉 관련 증빙 자료는 자율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협의 및 의견 반영 의무] 이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하며, 컴플라이언스파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4.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1) 문서의 의미

품의서, 보고서, 공문, 업무연락, 이메일, SNS, 수첩, 달력 등 회사 업무 관련하여 작성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2) 문서 작성시 준수 사항

- ① 부당공동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경쟁사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사 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사가 진행하는 할인/프로모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사와 동일하게~', 'L 사', 'M 사' 등의 직/간접적인 단어 노출 등

- ②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시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획득한 것만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기재한다. 경쟁사와 접촉하여 획득하였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인용하지 않는다.

- ③ 독자적으로 사업적 판단을 통하여 (가격 등을) 결정하였음을 반드시 적시한다

예시) 물가 상승, 투자비 상승이 지속되어 가격 조정 결정 등

(3) 문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점검

- ① 아래 사항 관련 문서 작성시 Ⅲ.1. (2) 및 Ⅲ.3. 체크리스트를 자율 점검하고, 본 가이드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한다.

- (매점, 매표) 가격, 할인 기타 프로모션

- ② 아래 품의 시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의하여 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품의에 첨부한다.

- (매점, 매표) 가격 관련 품의로써 대표이사 결재 필요 품의

Ⅲ. 체크리스트

1. 경쟁사 접촉 체크리스트

(1) 경쟁사 접촉 사전 체크리스트 (실제 만남이 있는 경우 만남 전 확인)

NO	경쟁사 접촉 사전 체크리스트	○	X	△
	접촉시 경쟁사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예상되는지 체크합니다.			
1	(매표, 매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관련한 언급 및 논의가 예상되는가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와 관련한 언급 및 논의가 예상되는가			
3	할인, 기타 마케팅 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행위와 관련한 언급 및 논의가 예상되는가			
4	출점 및 폐점 정보, 입찰 참여여부 등과 관련한 언급 및 논의가 예상되는가			
	접촉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5	위 4 가지 사항에 대한 언급 및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하였음을 명기 요구한다.			
6	거절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쟁사 접촉 사후 체크리스트 (만남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접촉 이후 확인)

NO	경쟁사 접촉 사후 체크리스트	O	X	△
	경쟁사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었는지 체크합니다.			
1	(매표, 매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관련한 언급 및 논의는 없었는가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와 관련한 언급 및 논의는 없었는가			
3	할인, 기타 마케팅 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행위와 관련한 언급 및 논의는 없었는가			
4	출점 및 폐점 정보, 입찰 참여여부 등과 관련한 언급 및 논의는 없었는가			

2. 경쟁사 접촉 (사전/사후) 신고 시 기재 사항

(1) 이메일 제목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경쟁사 접촉 (사전 또는 사후) 신고 (법무팀 홍길동)

(2) 신고 기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기재하되, ‘표’ 형식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표시는 내용을 확인 후 삭제하고 기재합니다.

접촉 내용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합니다(문자/메신저/SNS 등 포함).

(3) 여러 명이 동시에 만난 경우 체크리스트 각자 점검 후 대표자 1 인이 내용을 취합하여 신고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인	※ 신고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신고인과 접촉당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접촉당사자도 기재합니다.
접촉 경로	※ 문자/메신저/SNS/전화 등 모든 접촉 수단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을 제안하였거나 제안 받았는지 작성합니다.
접촉 상대방 및 연락처 / 기타 참석자	※ 상대방 소속 및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 세부사항 기재합니다. 기타 참석자도 기재합니다.
접촉의 목적	
접촉 일시 / 장소	
접촉 세부 내용 / 가이드 위반 우려 사항	※ 접촉 내용에 대해 상세한 내용 기재합니다. 특히,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내지 기타 이유로 본 가이드 위반이 우려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문자/메일/SNS 등)
첨부파일 목록	※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 그 제목을 기재합니다. 예시) SNS 캡처본, 문자 캡처본, 문서의 경우 스캔본, 모임진행 시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사본 등

3. 문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NO	문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O	X	△
1	당사의 독자적인 사업적 판단을 통하여 가격 등을 결정하였다는 점이 문서에 적시되었는가			
2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없는가			
3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만 인용하였으며, 그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